

방산수출 증진을 위한 군사용역회사 설립의 기초연구
-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 보험회사 설립 방안 -

조홍용¹

내용목차

1. 서론
2. GCC 국가와 안보환경
3. 장비소요 및 총사업규모 판단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5. 사전 준비사항
6. 결론

A Basic Study on a Mercenary Company for Export of the
Defense Industry
- Security Insurance Company for Gulf Cooperation Countries -

Cho, Hong Yong

Abstract

The GCC member countries are very rich but have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people and soldiers. As such, they hire numerous foreign worker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of some GCC countries exceeds their population). They also want to hire some mercenary troops. If South Korea establishes a mercenary company for the six GCC member countries, it will be a win-win deal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GCC countries.

The mercenary troops will be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mercenary company, and the weapons systems,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such company will be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The total expenses will include those for the personnel, weapons,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the operational expenses of the company will be checked by the GCC member countries.

Each GCC member country will maintain one fighter wing and two armored brigades but will be able to obtain additional assistance from five fighter wings and ten armored brigades at critical times. The South Korean mercenary company will be a security insurance company for the GCC member countries. It will enable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to earn money, and will generate tens of thousands of jobs for the young male South Koreans. It can form part of the creative economy.

Keywords: GCC, mercenary troops, security insurance company, defense industry

¹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Tel: 055-249-6345, E-mail: chy7902@korea.com)

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7일
논문수정일: (1차: 2013년 11월 15일, 2차: 2013년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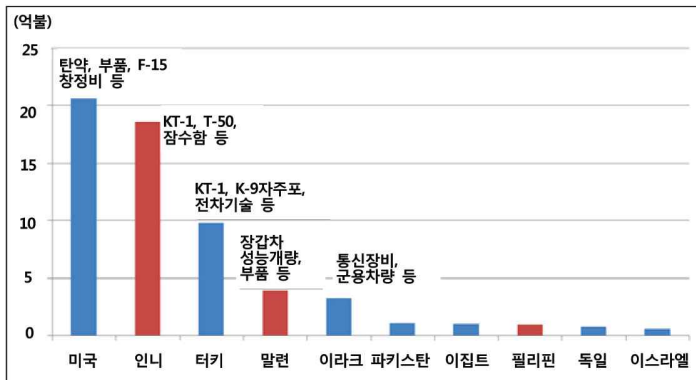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전투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 포탄 등 육해공군의 대부분의 장비들을 포함한 군수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첨단 장비를 제외하고 국내 수요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방위산업 제품은 대체로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쇄시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정부구매투라는 특징을 가진다.[4]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어서 일반 상용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방산업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는 분야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수입과 수출현황을 알아보자.

안영수 등 5명에 따르면, 지난 '05-'09 사이의 우리나라의 누계수출량은 612 TIV¹⁾로서 세계 17위를 기록하여 세계 전체 무기 수출량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계수입량은 7,087 TIV로 세계 3위를 기록하여 세계 전체 무기 수입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다.[3] 수입에 비하면 수출량이 너무나 약소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근래에 들어 잠수함, 전투기, 군수지원함, 구축함 등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상당히 개선을 시키고 있다. 박준수 등에 따르면 '07-'11년 사이의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주요 국가별 방산 수출 추진 실적은 <그림 1>과 같다.[1]



<그림 1> 주요 국가별 방산 수출 추진 실적 ('07-'11)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들은 세계의 평균적인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국가들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수준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다. 군함이나 잠수함, 전투기 등은 원래부터 매

1) Trend Indicate Value : SIPRI 가 사용하는 무기 거래량 지표, 1 TIV는 약 250만 달러에 해당

우 고가의 장비이다. 지상군 장비에서도 K-2 전차는 약 80억 원, K-9 자주포는 약 40억 원, K-21 장갑차는 약 3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도 결코 값싼 장비가 아니다. 스페인이나 호주 및 브라질과 같은 큰 나라이면서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들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인지 K-9 등에 대하여 조사만 해보고 포기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중동의 석유 부국들 중에서는 자국민들의 수가 부족하여 군인으로 근무할 병력을 모병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몇 있는데 이들 중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카타르, 오만 등이 특히 그러하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및 바레인과 UAE의 유사점은 자국민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귀화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인도, 파키스탄 및 가까운 인접국인 이란, 이라크인들이다. 해당 국가들이 내심 우려하는 것은 이란의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위세이다. 노동자 개인들이야 가족들의 호구지책인 이 직업마저도 없어도 어쩌나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지만, 이들 GCC 국가의 정치가들 또한 자국민들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이나 테러에 가담하면 어쩌나 하고 노심초사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군사용역회사를 위한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군사용역 틈새시장이란 자국민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적절한 수의 치안력 즉, 적절한 수의 경찰과 군대를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를 고용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직접적인 예를 살펴보자. 지난 2010년경 UAE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두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UAE 국방부 측에서 한국 국방부에 현재 프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병부대들을 한국군 부대로 대체하고 싶는데 기갑여단 2개와 전투비행단 1개의 파병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고 한다.²⁾

우리 국방부의 답변은 당연히 '불가'였을 것이다. 첫 번째로 북한의 침략 위협이 엄존하고 있는 가운데 F-16이나 F-15 전투기 1개 비행단과 2개 기갑여단을 UAE에 파병한다는 것은 실행은 고사하고 상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교나 부사관들은 직업군인들이므로 국방부에서 파병을 명하면 곧말 없이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군의 주전투력인 병사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 헌법에 명시된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지 파병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부대 파병의 어려운 점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정치상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부대의 파견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하나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를 해외에 용병부대로 파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경서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05년부터의 수년간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포괄적인 '파병법'을 만들지 못하고, 상당히 소극적인 수준인 '국군부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만을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제정하게 되었다.³⁾

2) 이 내용은 국방부 내부자에게 득문한 것으로 비공식적인 제안인지라 언론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제한사항으로 말미암아 전투부대의 파병은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UAE 왕세자는 우리나라의 특수전부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2010년 8월 우리 국방부장관의 UAE 방문시 UAE 특수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우리 특수전부대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10월 UAE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훈련여건을 확인하였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 'UAE 군사훈련협력단(아부다비)'을 아부다비 주(州) 알 아인 지역에 파견하였다.[5]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필하고 전역한 이후에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실업자 청년들을 위하여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이다.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되 해당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나라 방산장비를 위주로 전투장비를 구매하여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의 손실이 없이도 국내법적인 문제점이나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면서, 청년 실업대책에도 도움을 주면서, 방위산업체의 첨단 무기 등에 대한 대량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기회로 인식하여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GCC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보보험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의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취업난의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이 방안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고에서는 중동의 석유 부국들 중에서도 걸프협력회의에 속하는 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안보보험을 제공하는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군사용역회사의 부대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단위로 구성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총 사업비의 규모를 도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걸프협력기구의 국가들에 대한 자료는 관련 문헌 및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나 국방부 홈페이지 관련 게재내용이나 CIA fact book, 위키피디아 등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GCC 국가들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요르단 등의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만 다루었을 뿐, GCC 국가들과 주변국들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부적인 고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들이 알려진 바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경험요소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3)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김명자, 송영선 의원 등이 발의하여 파병관련 법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이 논의 되었다.

2. GCC 국가와 안보환경

2.1 국가별 개관

6개의 GCC 회원 각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자. 아래 <그림 2>는 GCC 6개국을 나타내고 있다. 바레인인 섬이지만 방죽길로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2> GCC 회원국들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192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고, 1932년 여러 왕국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사우디 왕국을 형성하였다.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절대군주국이다. 헌법이나 성문법은 없으며, 이슬람 율법을 비롯한 관습법이 그 역할을 한다. 의회는 없고, 그 대신 자문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120명으로 4년마다 국왕이 지명하게 된다. 2005년에 최초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6]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강요되는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다.

사우디는 국토 면적이 2,150,000km²로 우리나라의 10배나 되는 큰 나라이나 대부분 사막 지형이다. 세계의 원유 매장량의 약 17%의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유 보유 및 생산국이다. 인구는 2,694만 명으로 자국민이 2,136만 명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558만 명이다. 주민은 아랍계 90%와 아프로-아랍계 1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노동인구 약 800만 명 중 약 70%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2012년 1인당 GDP는 31,800\$이고, 수출품의 90%가 석유 및 석유제품이다.[7]

사우디의 특이한 점은 이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왕족의 혈통이 아니면 고위직에 오르기 어려운 신분제 국가라는 점이다. 또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실업자이다. 공식 실업율은 12%이고, 고졸자의 68%, 학위소지자의 32%가 실업자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 학비 등 모든 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모병제를 실시한다. 이슬람 종교법 상 징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의 수는 197,500명이다. 육군은 7만 명이고, 해군이 1만 8천 명이며, 공군은 역시 1만 8천 명이다. 국경 수비대 7만 6천 5백 명과 해안 경비대 1만 5천 명이 있으며, 경찰은 2만 명으로 모두 사우디 사람이다.[8]

2) UAE

UAE는 19세기경 영국과 조약에 의해 보호령이 되었던 여러 토후국들 중에 7개 토후국⁴⁾이 연합하여 형성한 연방국가이다. 7개의 각 토후국은 각각의 통치자가 지배하고, 중앙 정부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정 체제이다. 각 에미리트는 별도의 경찰권과 과세권을 갖는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중앙 정부에서 행사한다. 국토 면적이 약 83,600km²로 남한보다 약간 작은 크기에 해당하나 대부분이 사막이다. 인구 547만 명 중 약 19%만이 자국 시민권자이고, 아랍 및 이란계 23%, 남아시아(주로 인도와 파키스탄)계가 50%, 기타 8%로 이루어져 있다.[7]

UAE의 국방력으로 총병력은 약 52,500명이고, 육군은 35,000명, 해군은 2,500명, 공군은 약 9,000명이다. 그 외 친위대가 4,500명, 특수부대 500명, 국경수비대 500명과 해안경비대 500명이 있다. 지상군은 보병여단 6개, 기갑여단 1개, 포병여단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장비는 전차 600여대, 장갑차 600여대, 야포 300여문, 다련장 72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1개의 함대와 4개의 전대로 구성되어 프리깃 2척, 미사일함 8척, 경비정 20척, 보급선 20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은 전투비행단 3개, 수송대대 1개, 헬기대대 1개로 전투기 160여대, 훈련기 60여대, 지원기 14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⁵⁾고 한다.

UAE는 1인당 GDP로는 부동의 세계 1위의 국가로 2012년 말 평가액으로는 65,000\$이다.[7]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 고전을 하였다. 특히 두바이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위기를 겪었으나 아부다비의 석유 수입으로 지분을 보증함으로써 이를 커버하였다. 석유와 가스 수출 이외에는 진주 양식 및 대추야자나 말린 물고기 등이 수출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3)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1756년 사바하 족장이 쿠웨이트 수장이 되어 사바하 왕조를 열었다. 1871년 오스만투르크의 지배권에 들어가 바스라주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1899년 영국의 보호 하에 들어갔으며 오스만투르크 제국 붕괴 후 자치보호령의 지위에 있었다. 다음해에

4) Abu Dhabi, Dubai, Sharjah, Ajman, Umm al-Quwain, Ras al-Khaimah and Fujairah.

5) 2008년 무관 첩보로 획득한 자료임

공포된 헌법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채택되고, 주권은 국민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국가 원수는 사바가(家)의 세습군주였다.[6]

쿠웨이트는 196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90년에서 1991년까지 일어난 걸프 전쟁 때에는 이라크에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1990년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자국의 19번째 주로 강제 편입하였다. 알사바 국왕은 사우디로 도피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했으며, 1991년 1월 걸프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국토를 되찾게 되었다. 쿠웨이트에는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국토의 면적이 17,818km²로 대부분이 사막이다. 제대로 된 도시는 쿠웨이트시티 하나뿐이고 여기에 인구의 90%가 모여 살고 있다. 인구 270만 명 중 자국민이 140만명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130만 명이다. 쿠웨이트 시민권자는 45% 정도이고 기타 아랍인이 35%, 남아시아계가 9%, 기타 7%이다. 종교 현황으로는 무슬림이 85%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니파가 70%이고, 시아파가 30%이다. 1인당 GDP는 40,500\$로 매우 높은 국가이다.[7]

원유매장량 면에서 세계 4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셀오일의 개발가능성으로 인하여 원유매장량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여러 단계 하락하였다. 현재의 산유량을 유지한다면 향후 100년간의 채굴할 분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4) 바레인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나라로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1971년 카타르와 함께 독립하면서 영국의 통치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바레인은 원래 독립 이후부터 토후국이었던 2002년 2월에 일헌 군주국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군주의 명칭도 “아미르”에서 “국왕”으로 변경되었다. 인구 128만 명 중 바레인 인이 46%이다. 국토의 면적이 665km²로 대부분이 사막이다. 1인당 GDP는 약 20,500\$ 정도이다.[7]

바레인에는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5) 카타르

카타르는 19세기경 영국과 조약에 의해 보호령이 되었던 여러 토후국들 중에 연방국가에 함유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한 국가이다. 지금의 카타르 지방에는 약 10,000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랍족들이 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본래 아랍에미리트의 수장국 중의 하나였다가 1916년 영국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1971년, 바레인과 함께 영국 통치령으로부터 벗어났다. 국토의 면적이 11,437km²로 남쪽이 사우디에 연한 반도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다. 180만명의 거주자 가운데 14%만이 자국민이고 86%는 외국인들이다.[6]

국왕 부부가 전향적이어서 알자지라 방송국⁶⁾을 개설하여 중동지역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6) 알 자지라 방송은 카타르 도하에 설립된 아랍어와 영어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6) 오만

오만은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이다. 국토의 면적이 212,460km²로 한반도와 유사한 크기이다. 국토의 80%가 바위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맥이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는 무스카트이다. 인접국으로는 북쪽으로 아랍에미리트, 북서쪽으로 사우디, 서쪽으로 예멘과 인접하고 있다.

신밧드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오만은 한때 수메르식 이름인 마간으로 알려졌었다. 오만은 기원전 563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사트랩(페르시아에서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단어)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기원전 3, 4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제국은 7세기까지 지속된다. 한편 1세기가 시작할 무렵 아랍인들이 오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632년에 페르시아 제국은 오만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아랍인의 나라가 세워졌다. 751년에 이바디 무슬림들이 이맘 왕국을 오만에 세웠다. 이맘 왕국은 이맘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다. 이바디 무슬림들은 카리지트의 일파로 알려져 있다. 카리지트는 초기 무슬림의 한 분파로 4대 칼리프인 알리의 지지자들 중의 일부였다. 칼리프와 이맘은 종교지도자의 명칭인데 칼리프는 주로 수니파에서 사용하고, 시아파에서는 이맘이라고 부른다. 이바디 이맘국은 20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다.[6]

오만은 오랫동안 무역의 중심지였다. 17세기에 포르투갈 제국에 점령당한 적이 있었으나 1741년에 독립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기에는 중립을 지켰다. 도파르 반란(Dhofar Rebellion, 1962-1975)이 있었지만 이란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1970년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국왕이 집권한 이후 오만은 석유, 가스, 관광 자원 등의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오만의 인구 약 300만 명 중 30% 정도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이 있으나 이들이 노동력의 60%를 담당하고 있다.[7]

2.2 GCC 국가들의 안보 환경

이들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 중 사우디만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으로 자국인으로 적정한 군사력을 편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위협이 되는 이라크는 약 3,200만 명, 이란은 8,000만 명이다. 이들 주변의 위협 국가들이 굳이 침략주의를 표명하지 않아도 주변 약소국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들 주변국의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GCC 국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주변 위협국들은 극빈층의 인구가 상당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약 20%에 가까운 1,600만 명, 이라크는 25%로 800만 명이 절대빈곤층⁷⁾이다. 이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주변 부국들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란이나 이라크는 과거로부터 이 지역에서 서로 다투며 패권국가로 군림해온 국가들로서 자국민들이 주변의 소국들에 취업을 위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속으로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다.

GCC 국가들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함무라비, 네부카드네자르 등의 영결에 의하여 바그다드(현 이라크) 일대가 융성하면 바그다드의 지배를 받았고, 고레스, 다리우스 등이

7) 절대빈곤층 : 유엔에서 일인당 일일 미화 1\$ 이하의 생계비를 버는 가구를 지칭하는 용어

세를 얻으면 페르시아(현 이란)의 지배를 받았다. 가까운 과거에는 중동지역 일대가 오스만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다가 19세기경 부분적으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걸프 연안의 국가들이 영국의 보호령이 되기로 한 결정적인 원인은 당시 이 지역에서 횡행하던 해적들의 약탈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다. 오스만투르크는 힘이 약화되어 자신을 돌보는 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이들 해적들은 상당수 페르시아 왕의 해군력이면서 약탈자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페르시아 왕에게 약탈물의 일부를 바치는 봉신의 관계) 해적들에게 시달리던 이들 GCC 지역의 토호들이 영국의 보호를 기꺼이 받아들일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세력이었던 것이다.

1980년 이란에 종교혁명이 발생하여 샤 팔레비를 폐위하고 호메이니가 신정정치를 펼치자 이들 걸프협력회의의 국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무슬림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 이들 GCC 국가들이 수니파와 시아의 경계선상의 국가들이면서 수니파들이 권력을 장악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시아파들은 이란을 종교적인 정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란은 GCC 국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위협인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이란은 이들 국가와 해양을 경계로 하여 직접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가 1991년의 걸프전과 2003년의 OIF⁸⁾에 의하여 약화됨으로 인하여 이라크와 이란의 해계모니 다툼에서 이란의 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종교적인 정통성을 내세워 미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점점 더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들 GCC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오만이 GDP의 11.4%(세계 1위), 카타르가 10%(세계 2위), 사우디가 9.1%(세계 5위), UAE가 6.4%(세계 9위), 바레인이 4.5%(세계 20위), 쿠웨이트가 3.7%(세계 28위)이다. 이들이 안보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표로 종합하여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은 2.7%로 세계 47위이다.[7]

<표 1> GCC 국가들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

구분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비율(%)	11.4	10	9.1	6.4	4.5	3.7
세계 순위	1	2	5	9	20	28
비고					미군 주둔	

GCC 국가들은 수니파 중심의 온건하고 안보정책면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란이나 이라크 및 예멘 등의 외부적 안보위협 요소와 내부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1990년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은 GCC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다국적군의 작

8) Operation Iraqi Freedom,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실시한 군사작전

전으로 원상회복되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2001년 911테러의 여파로 발생한 OEF 및 OIF가 이제 다시 10년 이상을 경과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10년 말경부터의 아랍의 봄 사태는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등을 거쳐 현재 시리아에서 격렬한 내전을 겪고 있어 GCC 국가들의 안보면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안보면의 불안감이 크다고 해서 GCC 국가들이 GCC의 좌장 국가인 사우디에 자신들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반대급부로 사우디에 의한 내정간섭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안보보협용 군사용역회사를 위한 틈새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3 GCC 국가들의 안보협력 관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걸프만 일대의 아랍 국가들의 국제 경제협력체이다. 정식 명칭은 걸프아랍국협력회의(CCASG: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Persian Gulf)이다. 1981년 5월 25일 설립되어 페르시아 만 연안 2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이 기구는 현재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가 회원국이다. 단일 국가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1981년 11월 11일 리야드에서 조인되었다. 공식 명칭 외에 걸프협력국가(Gulf Cooperative Countries)로 불리기도 한다.[8]

모든 페르시아만 인근 국가가 협력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현재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에 내려진 조치였다. 기구 자체적으로 이라크의 현 정부를 돕기로 결의한 상태이다. 이들은 좀 더 통합적인 국가별 협력의 도모를 위해 이라크의 참여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이란은 협력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멘은 2007년부터 회원국 가입을 위해 협상 중에 있으며, 2016년경에 가입국으로 승인 받으려고 추진 중이다.

페르시아 만 인근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경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주목하는 바가 크다. 천연가스와 석유로 엄청난 재원을 모았으며, 수십 년간 이를 토대로 투자처를 찾고 개발한 결과 두바이의 경제적 성과는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 아부다비 투자처의 투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카타르와 UAE가 투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4 GCC 국가들에 대한 안보보협회사 설립 방안

안보보협회사 즉, 군사용역회사의 설립 방안으로 각각의 GCC 국가들은 2개의 기갑여단과 1개의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되, 장비와 시설과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군사용역회사가 우리나라의 공군 전투비행단이나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하는 우수한 자원들을 2년간 복무할 단기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할 간부 직원으로 나누어 채용하여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의 전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안보보협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으로 하여금 각 국가가 군사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걸프협력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상호 작전통제권을 이전하여 각국에 배치된 부대들이 침공을 당한 국가에 증원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침공을 당한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에 배치되어 있는 2개 기갑여단과 1개 전투비행단의 전력이 가용하며, 걸프협력회의의 결의와 우리나라 군사용역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주변 5개국에 배치된 다른 여단의 전력이 추가로 가용해지는 것이다.

결국 비용은 2개의 기갑여단과 1개의 전투비행단 분량을 부담하면서 유사시 10개 기갑여단과 5개 전투비행단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의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의 방위산업체가 국산 무기류를 임의의 국가에 임의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 건별 엄격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GCC 국가들은 현재 분쟁지역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특별히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 전투장비의 수출과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이나 인력수출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기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으로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장비소요 및 총사업규모 판단

3.1 기갑여단의 주요 장비 편성

일반적으로 여단이라는 조직은 필요에 따라 2-7개의 기동대대를 보유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부대이다. 우리나라의 기계화보병사단 예하의 기갑여단은 통상 2개의 전차대대와 1개의 기계화 보병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독립기갑여단은 5개의 기동대대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⁹⁾

이들 GCC 국가들과 협상시 이 지역에 배치할 여단은 독립여단형이므로 여단당 3개 대대형으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4-5개 대대형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차대대의 전차 보유 수량은 31대로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전차소대의 전차 대수 또한 협상을 통하여 3대 보다는 4대나 5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단에 3개의 전투대대와 1개의 기갑수색중대와 1개의 화력지원 대대를 가지는 경우로부터 여단에 5개의 전투대대와 1개의 기갑수색대대와 2개의 화력지원대대를 가지는 경우까지 적절한 수량을 구성하기 위한 계산을 해보자. 일단 소대당 전차의 대수는 4대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미군의 편제에 보다 가깝다고 할 것이다.

전차대대는 소대당 4대의 전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는 3개 소대와 중대장 전차와

9) 1989년 무렵 2기갑여단의 2기갑사단화가 추진되다가 고위층의 거부로 돈좌되었다. 이후 2기갑여단은 수년간 5개 대대형으로 유지하다가 다시 3개 대대형으로 환원되었다.

부중대장 전차로 2대를 편성하여 14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된다. 대대는 3개 중대로 42대의 전차를 보유한다. 여기에 대대장 전차 1대와 부대대장 전차 1대를 포함하면 44대가 되며, 정비대충장비 1대를 추가하여 45대로 편성한다. 이들 전차 외에 구난차(Recovery Vehicle) 4대와 AVLB(Armored Vehicle Launch Bridge) 4대를 편성하면 총 53대가 된다. 이외에 지휘용장갑차 2대와 120mm 박격포 장갑차 4대와 사격지휘차 1대를 편성하면 장갑차는 7대가 소요된다. 이들이 전차대대의 주요장비들이다.

이외에 통신차, 급유차, 화물차, 급수차, 일반차량구난차, 지프차 등을 편성하면 약 40여대의 일반차량이 필요하다. 케도차량과 일반차량을 모두 합하면 100여대가 되며, 실제 작전시에는 여단의 방공중대의 자주대공포 4-6문과 여단 정비중대의 근접정비팀의 구난차와 수리부속차들이 추진되어 10여대의 장갑차 및 일반차량이 추가된다.

기보대대는 소대당 4대의 장갑차를 보유하며, 중대는 3개 기보소대와 1개의 81mm 박격포 소대를 포함하고, 중대장 장갑차와 부중대장 장갑차로 2대를 편성하여 18대의 장갑차를 보유한다. 대대는 3개 중대로 54대의 장갑차를 보유한다. 여기에 대대장 장갑차 1대(전투용)와 부대대장 장갑차 1대(전투용), 작전장교용 장갑차 1대(지휘소용), 화력지원협조관용 장갑차를 1대(지휘소용)를 포함하면 58대가 되며, 정비대충장비 2대를 추가하여 60대로 편성한다. 이들 장갑차 외에 구난장갑차 4대를 편성하면 총 64대가 된다. 이외에 대대의 120mm 박격포 장갑차 4대와 사격지휘차 1대를 편성하면 장갑차는 총 69대가 소요된다. 이들이 기보대대의 주요장비들이다.

이외에 통신차, 급유차, 화물차, 급수차, 일반차량구난차, 지프차 등을 편성하면 역시 40여대의 일반차량이 필요하다. 케도차량과 일반차량을 모두 합하면 약 109대가 되며, 실제 작전시에는 여단 방공중대의 자주대공포 4문과 여단 정비중대의 근접정비팀의 구난차와 부속차들이 추진되어 10여대의 장갑차 및 일반차량이 추가된다. 필요시 여단 정비중대의 AVLB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

제병협동대대로 구성한다면 4개의 중대로 구성되면서 전차는 소대 4대, 중대 14대, 대대장 전차와 부대대장 전차로 30대가 되며, 이들 전차 외에 구난차 3대와 AVLB 3대를 편성하면 총 36대가 된다. 정비대충장비를 추가하면 37대가 된다. 장갑차는 2개 중대분 36대와 대대본부 2대(지휘소용) 및 120mm 박격포 4문과 지휘소용 1대, 구난차 3대, 정비대충장비 1대로 구성하여 총 47대가 된다. 이 대대는 케도차량이 84대, 일반차량은 약 50여대가 소요된다. 여단의 추가지원을 고려하면 대대의 평균 차량은 150대를 초과할 것이다.

여단을 구성할 때에 2개의 전차대대와 1개의 기보대대 및 1개 포병대대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1안), 1개의 전차대대와 2개의 제병협동대대와 1개의 기보대대로 구성할 수도 있다. 4개의 기동대대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기갑수색을 중대가 아닌 대대로 편성하여 5개의 기동대대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포병대대 2개를 편성하고 방공포병도 대대급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2안) 가장 크게 편성하는 방안은 전차 2개 대대와 제병협동 2개 대대와 기보 1개 대대로 편성하는 방법이다(#3안). 이 경우에도 기갑수색대대와 2개의 포병대대 및 방공대대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헬기 대대를 추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투헬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입하지 않았다. 실제 협상을 실시할 때는 상황에 따라 먼저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의 기갑여단에 대한 전차 및 장갑차와 자주포의 소요를 개략적으로 종합하여 도표로 표현하면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2> 주요 장비 소요(안)

구분	전차	장갑차	자주포/탄운차	기타(방공/공병/의무/통신)	소계
# 1안	116	129	24 + 12	16/16/12/12	337
# 2안	165	244	36 + 18	24/24/18/18	547
# 3안	260	253	48 + 24	36/36/24/24	705

여단의 일반차량의 수는 케도차량의 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대략 케도차량의 수와 일치한다고 개략 계산하면, 여단의 장비의 총 대수는 1안이 670여대, 2안은 1,100여대, 3안은 1,400여대에 달한다. 1안과 3안은 거의 2배의 차가 난다. 이때, K-9 자주포에 부수적으로 운용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는 K-9 2문 당 1대씩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3.2 전투비행단의 주요 장비 편성

전투비행단의 구성은 통상 4대의 전투기를 1개의 편대로 하고, 4개의 편대를 1개의 대대로 구성한다. 대대의 전투기 수량은 16대가 되는데 예비전투기 4대를 추가하여 20대로 1개 대대를 구성한다. 통상 이러한 대대를 3개에서 5개 정도 모아서 전투비행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대대들은 통상 단일 기종으로 구성하나 여단 전체를 동일 기종으로 구성할 것인지 혼성 편성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용역회사의 경우라면 소요 국가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될 것이다.

전투비행단에 배치할 전투기를 생산하여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이미 F-16이나 F-15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면서 이미 면허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이들 국가에 배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라이선스에 대한 미국의 관련 회사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이들 국가가 F-22나 F-35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과의 별도 협의는 물론 조종사의 기종전환 훈련을 위한 비용 또한 추가로 필요해 질 것이다.

전투기 대수로만 계산하자면 1개 전투비행단은 최소 60대로부터 최대 100대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6개 전투비행단이라면 최소 360대로부터 최대 600대까지가 된다. 조종사의 충원은 지상군 병사들의 충원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지상군은 우리나라 기계화부대의 규모가 전차 및 장갑차 약 2,400여대씩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에서 전역하는 자원들의 일부를 군사용역회사에 충원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는 우리나라 공군이 F-16 170여대와 F-15 60여대를 운용할 뿐이어서 용병회사의 전투기 소요수량이 360대라면 충분한 수의 조종사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통상 조종사는 비행기에 비하여 더 많이 필요하다. 약 1.5배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므로 1개 대대가 60대의 전투기를 운용할 때 조종사는 90-100명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군의 조종사들은 조기에 전역하지 않는다. 대체로 중령 진급에 실패한 소령들이 용병회사가 확보할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이때의 조종사들의 연령은 약 38-40세 전후가 되므로 향후 약 15-20년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5-20년에 걸쳐서 매년 30-40명씩 유치한다면 소요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병회사에서 이러한 숫자를 계속 채용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우리 공군 출신의 조종사 확보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3.3 총 사업비의 추정

군사용역회사는 청년실업대책을 겸하여 전체적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투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훈련 수준이 최고점에 이른 병사들을 2년 정도 고용하기 때문에 훈련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20년을 전투병으로 근무할 장기 인력이라면 병사들일지라도 연봉 약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숙식과 기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사관 및 장교들에게는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약 15만 \$ 정도의 평균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 해소책의 일환으로 젊은 청년들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고려한다면 의식주 제공 하에 1인당 연봉 약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지원자의 충원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금액은 육군의 단기하사(전문하사) 급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의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10만 \$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1개 기갑여단의 병력 소요를 약 3,000명으로 고려시 12개 여단은 36,000명이다. 이들에 대하여 평균 인건비 10만 \$을 고려하면 약 4조 원이 되고, 15만 \$을 고려하면 약 6조 원이 된다. 두 가지 금액의 평균 금액은 약 5조원이 된다.

1개 전투비행단 역시 약 3,0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조종사는 60대형 전투비행단에 약 100여 명을 고려한다. 조종사는 연봉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대대당 조종사 인건비는 300억원이 된다. 기타 인원의 평균 연봉은 15만 \$로 한다. 6개 비행단이면 조종사를 제외하고 17,400명이다. 이렇게 하면 전투비행단의 총 인건비는 약 2조9천억 원 내외가 된다.

연간 인건비 총액은 약 7-9조 원이 된다. 장비비는 지상군 주요 전투장비 세 가지 종류에 약 32조 원, 전투기를 F-16전투기로 고려시 약 18조 원이다. 만약 F-15를 고려한다면 그보다 두 배인 약 36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장비비를 작은 금액으로 상정하여도 총 50조원으로 12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경우 연간 장비비 소요액은 약 4조 원 정도가 된다. 인건비 역시 작은 쪽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라도 연간 인건비는 약 7조원이 된다. 인건비와 주요 전투장비의 조달비용만으로도 약 11조 원 내외의 사업비에 해당한다. 기타 장비와 시설비 및 훈련비, 탄약비 등을 고려시 20% 정도인 2조 원을 추가하여 연간 약 13조 원 정도의 사업비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각각의 국가는 총액의 1/6인 국가 당 연 2.2조원(약 20억 \$)의 지출로 1개의 전

투비행단과 2개의 기갑여단을 보유하게 되며, 유사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5개 전투비행단과 10개 기갑여단의 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4.1 군사용역회사 소속 부대들의 임무수행 한계에 대한 검토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병력들은 군사력의 3대 기능 중 1-2가지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협상하여야 한다.

필자는 군사력의 3대 기능을 1단계는 치안질서 유지의 지원, 2단계는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 3단계는 외부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의지의 강요로 구분한다.

1단계의 기능이란 평소 국내의 무장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를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일단 유사시 계엄이 선포되면 해당지역의 질서유지를 군사력이 직접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력이라 하더라도 이들 1단계의 기능은 충분히 달성하도록 해당 국가의 경찰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 해당 국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용역회사로서는 이 부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급적 제외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의 기능이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실시하고, 억제에 실패 시 직접적인 교전으로 침략군을 격퇴 내지는 격멸시키는 활동이다.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는 위험 지역이나 증원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사전 전개나 경고 사격 등을 비롯하여 침략 세력과의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행위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전투 참여의 보상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준의 전투수당을 별도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3단계의 기능이란 아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행사하여 침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제평화에 어긋나는 침략적인 행동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일체 금지되도록 협약(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4.2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한 검토

걸프협력회의 6개국이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라크나 이란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여 회사가 소속 전투부대를 GCC 6개 국가에 배치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이라크나 이란 등과의 교류를 손상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 이라크나 이란이 국제평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유엔의 군사적 응징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 지역에 배치된 우리나라 군사용역회사의 부대들이 이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이들 이라크나 이란 등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야 한다.

외교부에서는 “오직 이들 나라를 외부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방호하고, 국내적인 치안질서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보낸 것일 뿐이다.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국군부대를 파병한 것은 아니다. 또 침략행위에는 일체 가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들 중동지역 국가들 모두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중립적인 국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며, 특별히 당신들 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파병한 것이 아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군사용역회사의 부대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4.3 군사용역회사 설립 관련 GCC 내에서의 문제점

이들 6개 국가가 협의하여 안보협력보협회사를 통한 군사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경우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하여 회원국에 대한 침략행위가 이루어지면 다른 나라에 배치되었던 군사용역회사의 부대들까지 투입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GCC 회의에서 6개국의 합의와 군사용역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평시 월급액의 약 3배 수준의 전투수당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였을 경우 상호 협력하여 군사행동을 취하는 군사동맹관계의 아랫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 즉, 대사를 파견하여 통상적인 수교관계를 이루는 것을 1단계로 칭한다면, FTA나 협력회의, 공동시장 등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2단계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였을 경우 군사행동의 보조를 같이하는 군사동맹의 경우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안보보협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추가로 안보협력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2.5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분류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국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일들을 상당수 겪었다. 미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충분한 정도의 안보협력관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 소련과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의 근본적인 위협인 북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선택이 가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걸프협력회의의 6개 국가 중 나머지 5개의 나라가 사우디에 대하여 받는 느낌이 그러한 정도에 해당한다. 안보보협회사는 그러한 내정간섭의 우려를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는 지금도 나머지 5개국을 사우디 왕국의 일원이 되라고 회유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이러한 안보보협회사에 대하여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보협회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변 강대국인 이

라크나 이란에 비하여 사우디의 군사력이 현저히 열세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인구의 열세로 인하여 사우디가 이란이나 이라크에 무력으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안보보협회사가 제공하는 전투력은 그러한 전력상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좋은 방안이 되므로 사우디로서도 유익한 면이 커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보협회사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우디는 이들 GCC 국가들 중에 가장 큰 나라이며, 가장 부국이므로 안보보협회사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사우디에 설치하는 것이 토지의 획득과 인력의 조달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생활여건을 고려하면, 사우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수하기에는 너무나 엄격한 회교율법을 강요하므로 보다 완화된 국가인 UAE나 카타르 또는 바레인을 생각할 수도 있다. 군수보급은 사우디를 이용하되 휴양 및 행정시설은 이들 국가에 둘 수도 있다. 의도적인 분산배치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미리 점검하여 GCC 전체회원국과 동시협상을 시도하여야 한다. 개별협상 시에는 서로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안보협력회사가 가운데에서 협조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국가가 해군력까지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동일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수상함 및 수중함을 각 국가 당 1개 전단씩 구성하고, 통합 정비 및 지원시설을 중심국가인 사우디에 건설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군과 공군에 이어 해군력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자 내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파견한 군대로서 작동하는데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군사용역회사가 국방부 및 국방부 외곽 내지는 등록 단체들의 산하 회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4.4 군사용역회사 설립의 국내적인 문제점

1) 보충 한계와 운영 주체와 특혜 시비

군사용역회사의 설립과 운용은 장기적인 안목과 정부의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산하기구와 같은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설립한 사설회사를 믿고 안보보험을 드는 국가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용역회사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와는 다소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명시적으로는 해당 국가들에게 보증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장하는 것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군부대가 파병된다면 안보보협적인 측면은 확실하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하여 국군부대를 용병으로 파병하는 것을 문제시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는 국민들의 자재들로 구성된 의무복무제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된 병역의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이다. 가장 소극적인 자세로는 외부에서의 침략으로부터 영토와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국한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유엔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병역의 의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평화활동¹⁰⁾이란 유엔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작전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의 “국군부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보다는 월등히 포괄적인 활동들에의 참여를 상정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GCC 6개 국가들을 위한 안보보험용 용병부대로 국가정책에 따라 국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안이 국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부대의 형태로는 파병하기에 불가능할 것이고, 일반 회사의 형태로는 안보보험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직업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어떤 개인에게 그러한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을 허가하고, 그 회사의 활동을 정부에서 지원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인 특혜 시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개인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든지 간에 왜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군사용역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GCC 국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보보험회사로서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나의 가능한 방안은 국방에 관련되는 단체에게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여 그 회사의 수익금이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 부대 및 근무 요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육해공군의 예비역으로 하여금 육군협회나 해군협회 및 공군협회를 결성하여, 이들 협회가 콘소시엄을 형성하고, 그 콘소시엄이 소유하는 군사용역회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육군협회는 이미 결성되어 있다. 미국의 육군협회인 AUSA¹¹⁾를 모델로 하였으나 기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결성된 육군협회라도 그 성격은 다소 수정하여야 한다. 활동의 목표를 “육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AUSA와 같이 현역들도

- 10) 국제평화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실시하는 활동의 한 갈래로 분쟁예방활동, 평화조성활동, 평화유지활동, 평화강제활동, 평화건설활동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분쟁예방활동은 여러 가지 감시 및 조사와 조정, 협상, 중재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평화조성활동은 분쟁 당사자들 중 지배적인 리더들을 상대로 분쟁의 무의함을 설득시켜 평화조약이나 휴전조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평화유지활동이란 보다 나은 상태의 평화로의 진행을 위하여 합의된 평화조약이나 휴전조약이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다. 평화강제활동이란 합의한 당사자들 중의 일방이 합의된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거나 인종청소 등 극악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력으로 개입하여 중지 또는 원상복구 시키려는 활동이다. 평화건설활동이란 평화유지활동이 완료되어 새로운 국가체제를 성립시키고 발족시켰더라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지원 자금의 유치와 집행의 보조 및 감시와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 11)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 비영리 사설기구로 미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누구나 지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미 육군을 옹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육군의 역할을 지원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복지 후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협회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하는 등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육군협회는 각종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되 그 수익은 육군과 육군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매장이나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등의 운영을 현재의 국군복지단 체제에서 육·해·공군협회에 위임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고, 군사용역회사도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외 무기 및 장비 전시회나 용역 컨설팅,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각군 요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도 동일한 형태의 협회를 설립하고, 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협회들이 관여하는 부분만큼의 지분율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콘소시엄의 형태로 군사용역회사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군사용역회사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한 회사가 아니게 되므로 국가정책적인 지원하에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 수익금이 국민의 자제로 구성된 국군부대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확실하여 정치적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휘권 행사 관련 문제

해당 부대의 장비와 시설과 토지는 해당 국가의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군사용역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온전히 군사용역회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소유이다. 따라서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는 병력은 회사의 소속이며, 장비와 시설과 토지는 해당 국가의 소유이고, 전투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권은 회사의 권한이나, 전투행위를 위한 명령권이 해당 국가에게 필요하므로 해당 국가의 국방장관 또는 국방총참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인 지휘권이란 인사행정권을 포함하여 임용 및 면직, 휴가, 훈련 및 군수품의 보급까지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군사용역회사가 책임지고 유지하여야 한다.

안보보험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통제권은 해당 국가의 국방부에 귀속될 필요가 있다. 이 작전통제권은 해당 국가에 위임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에게 점령당한 쿠웨이트처럼 해당 부대가 해당 국가 외부로 격퇴되어진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지휘부가 와해되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GCC의 결의 또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안보보험으로의 군사행동이 정당화되는 상황이거나 유엔군이 결성되는 경우에 이에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군사용역회사에서 이들 전투부대들을 적절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관에게 위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용역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별도의 지휘부를 구성하여 파견할 수도 있고(이러한 조치는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유엔에서 유엔군사령관으로 선임된 지휘관에게 군사용역회사에서 GCC와 협의하에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양자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GCC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때에 GCC 지휘관에게 위임되더라도 가급적 안보보험회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에 의뢰하여 선임한(고용한) 한국군 지휘관의 직접 지휘 하에 GCC 군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때의 한국군 지휘부는 월남전에서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협상이 가능한 삼성장군급 이상이 지휘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취업 전투원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

한편 군사용역회사에 취업하여 전투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 시비도 발생할 수 있다. 단기복무자의 경우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2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동원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최초 전역 1년차에는 편성만 실시하고 동원훈련은 면제받기 때문에 1년차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년차에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2년차에 받지 않은 동원훈련을 귀국한 후에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면제해 줄 것인가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훈련의 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현역과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중인 군사용역회사의 전투원이 전투준비가 더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원예비군은 기계화부대에서 전역하였다라도 동원차원으로 편성시 다시 기계화부대의 보충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임의의 부대에 임의로 배분되기 때문에 소총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전투력의 수준 유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충분히 성숙된 단계에서 군사용역회사의 사원 모집 인원은 연간 약 2-3만명에 해당할 것인데 이들에게 2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동원훈련 중 2년차 동원훈련을 미참하였으므로 3년차부터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도록 할 것인지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3년차부터 5년차까지만 동원훈련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 또한 특혜의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을 1년을 연장하여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고, 향방훈련을 7년차부터 9년차까지 받도록 하여 특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동원 편성이 실시된 국내의 부대 동원훈련에 맞추어 개인별 휴가를 이용하여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5. 사전 준비사항

5.1 방산업체들의 준비사항

전차, 자주포, 장갑차, 그리고 항공기 등을 포함하여 발전기, 에어컨 등 모든 장비들은 사우디 등 GCC 국가들의 환경에서 운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곳의 사막은 넓고, 황량하고, 더울 뿐 아니라 매우 미세한 모래 입자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각종 기동장비들은 엔진이나 냉방기의 에어필터를 잘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기준은 이곳에

서는 적용하기 곤란할 수가 있다. 또한 이 모래 먼지에 염분이 많다고 한다. 염분은 모든 쇠붙이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약조건의 환경에서도 장기간 무리함이 없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사우디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K-21 장갑차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변속기는 유압유의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이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케도 1벌은 무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여 고무패드와 녹아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2] 이러한 상태로는 전투장비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장비들을 모두 국산으로 갖추어야 훈련소요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전차의 경우도 적지 않은 개선점들이 예상된다. K-2 전차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라는 운용 조건을 기준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전차 제작 국가들 중에서 명성이 익히 알려진 나라들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는 높이가 3.3m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K-2 전차가 2.2m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측은 전차의 주포가 높은 편이 사막지형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사막에서는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먼저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하여 적을 격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보고 먼저 사격할 수 있으려면 주포의 위치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체의 높이를 높게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군사용역회사의 장비 수출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K-2 전차의 낮은 차체 높이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전차는 마치 각개전투를 실시하는 병사들이 다양한 지형의 기복을 이용하여 약진과 엄폐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지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오펜·엄폐를 실시할 적절한 지형지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의 각개전투 개념 보다는 원거리 사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논리를 따라 전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메르카바 전차는 저판의 높이가 60cm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중동지역의 기상현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통상 온도를 측정하는 백엽상은 잔디밭에 1.5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백엽상의 온도와 열사의 모래 지면에서 50cm 이내의 온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면의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 전차의 저판의 높이를 60cm로 높게 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K-2 전차도 GCC 국가들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개량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극한적인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부분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현장에서의 전투효과를 올리기 위해 차체의 저판의 높이를 60cm 이상이 되도록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팔 부착 각도를 조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개량이 가해진다면 명칭을 K-2A1 또는 K-2G 등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실 내부의 에어컨은 우리나라에서의 요구 성능보다 한층 높은 성능을 요구할 것이다. 낮에는 섭씨 65도에 달하는 외부 온도를 보여주며, 엔진실은 엔진 내부의 연소현상에 따른 발열로 인하여 이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는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난방기가 필요하다. 중동지역은 냉난방이 모두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부분은 GCC 국가 국방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5.2 군사용역회사의 구성을 위한 준비사항

군사용역회사의 주주들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협회들과 방위산업진흥회(또는 수출업체의 콘소시엄) 등이 될 것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각군협회의 참여분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되는 방진회 또는 방산업체들의 콘소시엄은 역시 수출하는 장비들의 구성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율로 참여하게 하고, 군사용역회사의 운영에 관한 발언권은 군사용역회사와 방산업체들의 콘소시엄과의 합의하에 조율되되 전체 의결권의 5-1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산업체들이 군사용역회사의 구성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투장비의 선정과 부대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산회사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안보보험을 위한 군사용역회사인지 방산제품의 수출을 위한 군사용역회사인지 해당 GCC 국가들이 의문점을 토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사용역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주가 되어보이지는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의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해당 회사는 이미 장비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개별회사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5.3 각군협회 콘소시엄의 준비사항

각군협회의 콘소시엄은 GCC 국가들과 및 모집하는 개인들과의 계약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준비하고, 기계화부대의 전역자들과 비행단의 전역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현지에서의 복지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인 것이다. 왕복 항공 편익과 휴양 시설, 교육 부분, 주변 지역의 여행 등에 대하여 회사 운영의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군사용역회사가 GCC국가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은 최초 약 30년에서 50년으로 정하고 매 5년에 한 번씩 수정의 시기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수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년을 요구하는 것은 기 계약된 병력들에 대한 최대한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새로운 한시적 자원을 선발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또한 각종 지원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5.4 정부(국방부)의 준비사항

국방부에서는 우선 각군협회 및 군사용역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실시

하고, 다음으로는 방위산업체들의 장비 개량에 관한 실태 및 필요성을 조사한다. 군사용역회사의 전투부대가 사용할 장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제작되어 조달되게 하려면 사우디와 같은 사막의 환경에서 충분한 운용성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한 이후 정부차원의 주도하에 방산업체들이 달성해야 할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하고 이를 업체들이 수년 내에 보완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각국들과 국방부 간의 각종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들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호 군수지원협정, 상호 정보보호협정, 상호 국방협력협정, 상호 방위산업발전 지원협정 등등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협정들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거나 차후의 군사용역회사 설립 및 운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비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국방부에서는 무관들을 통하여 GCC 6개국의 국방기획담당자에게 안보보험을 위한 군사용역회사 설립안을 설명하게 한다.

다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방부 장관의 공식 제안을 위한 6개국 방문을 실시한다. 국방장관은 방문 중 각종 국방부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를 예방하여 직접 설명하여 납득시키며, 차후 대통령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이 특히 역점을 두어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적인 제한사항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으로 처리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인 운용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통제하는 회사이므로 보증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한편, GCC 국가들은 대부분 군주국(왕국)들이므로 국방장관의 순회방문으로 계약이 완료되기는 어렵고, 격에 어울리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정상회담까지 필요할 것이다. 국방장관의 순방에서 본질적인 토의를 마치고, 정상회담을 통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최소한 향후 약 100년 정도는 현재의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GCC 국가들과의 협의 하에 안보보험용 군사용역회사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GCC 6개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군부대를 유지하여야 하나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크기도 작고 국민들의 수도 적어서 적절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 다소 적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안보 수요를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미군, 프랑스군, 이태리군 등이 주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군부대를 이들 국가에 파병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우리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안보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과 국내법적인 문제, 그리고 헌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GCC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전투비행단이나 기갑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소요되는 병력들은 군사용역회사의 형태로 전역한 자원들을 단기와 장기 자원으로 구분하여 회사원으로 모집하여 파견하는 것이 가능성 있는 방안이다.

보다 확실한 안보력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용역회사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안보보험회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GCC 6개 국가들과 단체로 협상을 실시하여 어떤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이들 나라에 배치된 한국군 군사용역회사의 부대가 해당 국가들의 협의 하에 우선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구성되어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를 담당한다.

결국, GCC 각 회원국은 2개 기갑여단과 1개 전투비행단을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10개 기갑여단과 5개 전투비행단의 전투력을 추가로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안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 첨단 방위산업제품을 포함하여 군용품 일체를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에 고수익의 일자리를 수 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병력들이 근무하는 2년 동안에 아랍어와 아랍 문화 및 영어를 집중 공부하게 하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진출할 때에 이들이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의 양성인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안정적인 석유수입원의 유지에 기여함과 아울러 환류의 전파나 한국 수출의 확대, 원자로의 수출 등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 이전에 방위산업체들이 GCC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군에 납품하는 모든 장비와 물자를 개선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방산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GCC 국가들에게 수출되는 전차나 장갑차 및 전투기와 같은 주요 전투 장비들은 국내 조달 물량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산 시장의 개척은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무기구매의 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매량이 증가하는 몇 안되는 지역에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블루오션의 개척이 곧 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며, 이러한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가 곧 창조적인 경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끝)

참고문헌

- [1] 박준수·이호중, “최근 방산 수출 확대를 계기로 살펴본 방산 후발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480호(13-37), 2013, pp. 2-3
- [2] 방위사업청·KOTRA 글로벌연수원, 『2013년도 상반기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경안인쇄사, 2013, p. 85
- [3] 안영수·장원준·김정호·김창모·조은정,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 평가』,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618, (주)유성사, 2011, pp. 132-138
- [4] 장원준·안영수·김정호·지일용·이상현·김창모·김미정·신재영, 『주요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652, 삼신인쇄, 2012, pp. 65-85
- [5]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검색일: 2013. 10. 8)
- [6] 네이버, <http://www.naver.com/>, 두산백과 (검색일: 2013. 10. 16.)
- [7] CIA 홈페이지, <https://www.cia.gov/index.html>, library>World fact book (검색일: 2013. 10. 17)
- [8]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3. 10. 17)
- [9]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3. 10. 19)